

수원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0나25235 판결 [공사대금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0나2523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0 선고 2019가합40930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유규환, 이아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이승형

변론종결 2022. 5. 12.

판결선고 2022. 6. 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0. 선고 2019가합4093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내지 11, 17, 21호증[갑 제9호증(외부공사 하도급계약서)]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2022. 5. 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Q이 R을 통해 피고 명의로 원고와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주장을 번복하였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2. 3. 피고와 사이에 D이 발주자인 의정부시 P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외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9,300,000원(부가세 10%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24.경 위 외부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공사 부분을 인도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87,230,000원(= 공사대금 79,300,000원 + 부가가치세

7,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 날인 2018.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9.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나 청, 판사 류희상